

「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의 설치 및 운영 규정」 일부개정안

2025. 11. 20.(목), 교육기획부

□ 개정 사유

-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교육 운영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규정 개정 필요

□ 주요 내용

- **【제6조】 당해 연도 교육기본계획을 1월말까지 수립**
 - (실효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기본계획 수립 일정 현실화)
 - 종합적인 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교육 운영 예산 확정 시점(12월말), 전년도 교육운영평가 반영, 타부서 및 주무부처 협의 일정 등 고려 필요
 - * (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) 2025년 교육운영계획 2025.2월 발간
- **【제15조】 위탁교육기관 자격 요건을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한 문구 삭제**
 - AI 등 IT 기술 활용, 체험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활용한 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 사항 삭제

□ 신·구 대조표

현행	개정(안)	사유
제6조(교육기본계획) ①~② “생략” ③ 개발원의 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<u>다음 연도의 교육기본계획을 매년 11월 말까지</u> 수립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1~5. “생략” ④ “생략”	제6조(교육기본계획) ①~② “현행과 같음” ③ 개발원의 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<u>당해 연도의 교육기본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</u> 수립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1~5. “현행과 같음” ④ “현행과 같음”	· 기본계획 수립 일정 현실화

현행	개정(안)	사유
<p>제15조(위·수탁교육의 실시) ① 개발원은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<u>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외부 행정기관</u> 또는 교육연수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~③ “생략”</p>	<p>제15조(위·수탁교육의 실시) ① 개발원은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<u>외부 행정기관</u> 또는 교육연수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~③ “현행과 같음”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자격 요건 삭제
<p><u><신설></u></p>	<p><u>부 칙(2025. 12. 00.)</u> <u>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부칙 신설